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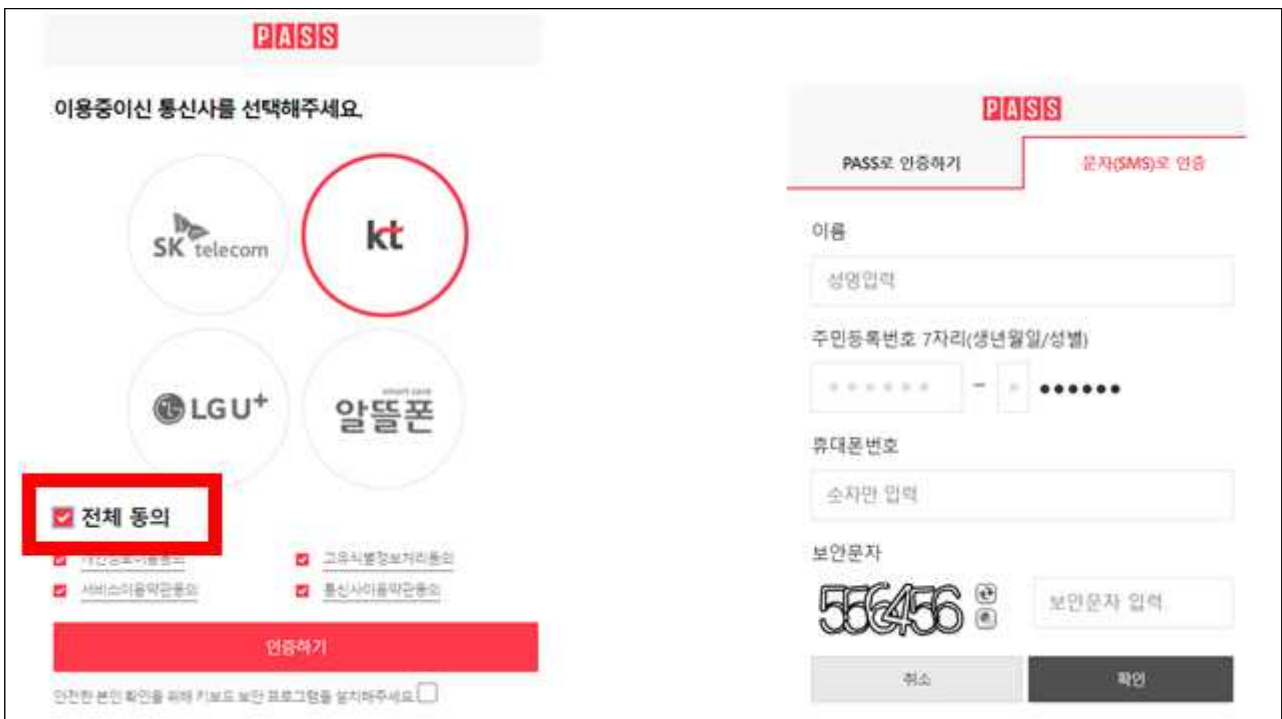
인터넷 접수 방법

(순서1) 회원가입(배출가스 등급제)

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<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>) 접속

② 회원가입 클릭(홈페이지 오른쪽 상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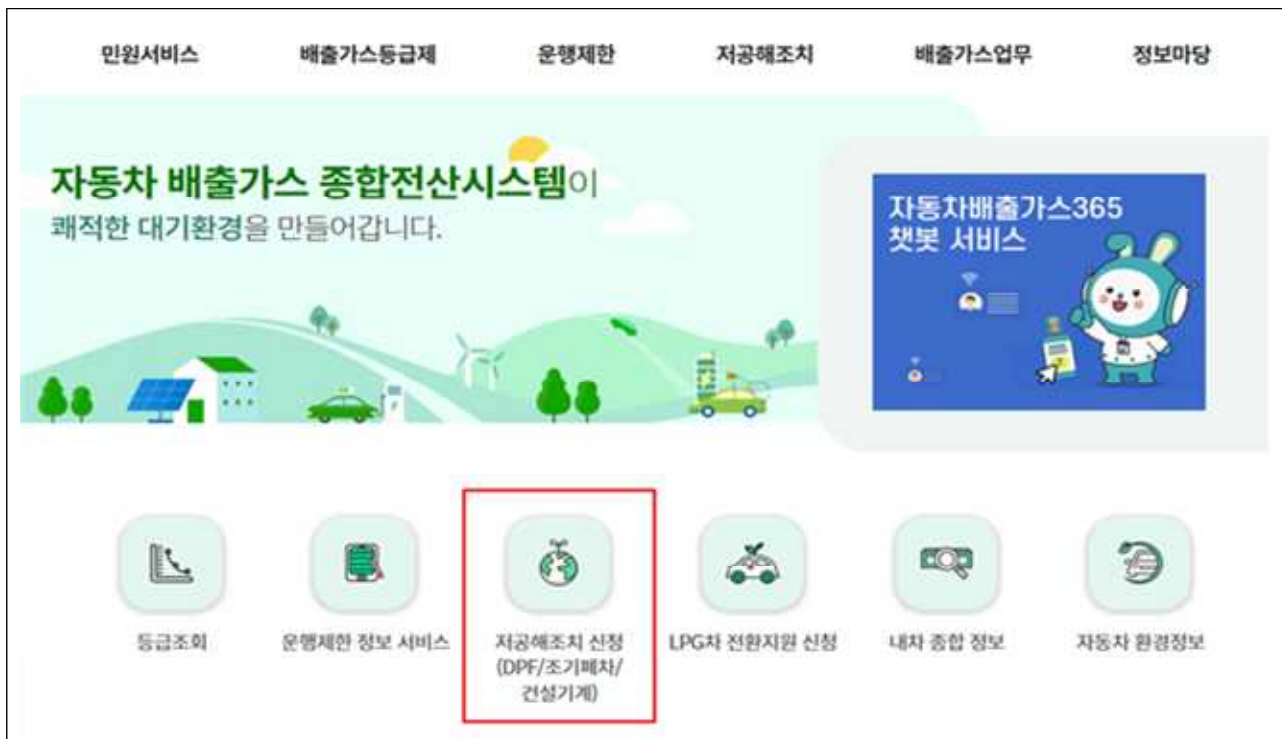
일반회원 가입 →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→ 만 14세 이상가입
→ 본인인증 클릭 →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→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
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→ 문자인증 클릭 → 개인정보 입력 → 확인 클릭 →
인증번호 6자리 입력 →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→ 가입신청 클릭



(순서2)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

<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>

- ◆ 저공해조치 신청(DPF/조기폐차/건설기계) 클릭 →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→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(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)
저공해조치방법(*) 조기폐차 클릭⇒ 저공해신청 클릭



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> 저공해조치 신청

○ 이용약관 동의

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.

Ⅰ 이용약관(필수사항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약관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(이하 "당 사이트"라 한다)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, 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
② 이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③ 당 사이트의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

☒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.

※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동의하지 않습니다.

동의합니다.

저공해조치 신청

민원서비스 > 저공해조치 신청

○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

※신청자격 및 미개발장치 관련 경우 차량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, 조기폐차 신청만 가능합니다.
 ※설치 지원 및 주차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지역번호 + 120)
 ※저공해조치 신청 전,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※기타 증명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
*표시영역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.

신청자명			
*휴대전화(대표자)	010		
*자동차 등록번호			차량조회
※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.			
차대번호			
*저공해조치 방법	☐ 차량장치 부착 ☒ 조기폐차		
취약계층 / 소상공인	☐ 취약계층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		
	☐ 소상공인 여부 파일첨부 선택된 파일 없음		
취약계층,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합니다. 미제출 시 취약계층, 소상공인 적용 불가 (문의처: 1577-7121) ※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(*.zip) 또는 PDF(*.pdf), 이미지(*.jpg, *.jpeg, *.png)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.			
차명			
연식			
소유자명			
주소			
신청지자체			
전화번호	[선택]		
팩스번호	[선택]		

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,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□ (확인사항)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(배출가스 등급 및 차량장치 부착 여부 등)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 * 관련규정: 환경부 고시 제2020-50호 "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"
 조기폐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
신청취소

저공해신청